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624 2017. 6. 22. (목) 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: 이숙애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: 2017년 5월 29일

다. 회부일자: 2017년 6월 2일

라. 상정일자: 2017년 6월 9일

(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O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숙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O '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'전문성 과 기능 강화를 통하여 정보화교육과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정책 실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,
- 제6조 제3항제3호에 "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 기관 및 학술 단체 등의 업무 관계관"을 신설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김덕환)

- 본 개정조례안 『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방에 관한 조례』에서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·관리에 관한 심의·자문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, "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" 구성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,
- 안 제6조에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중 교육감소속공무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, "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학술 단체 등의 업무관계관"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,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및 교육정보화 지원과 역기능 예방 관리 사업 실현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 -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"교육감"을 "충청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위촉한다"를 "위촉하되,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업무 관계관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본계획 수립) ① 교육감은	제4조(기본계획 수립) ① 충청북도
해마다 정보화교육에 관한 기본	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
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<u>다)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· ② (생 략)	제6조(위원회 설치) ①·② (현행과
	같음)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	③
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	<u>위촉하되,</u>
위촉한다.	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
	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〈신 설〉</u>	3.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
	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학술
	단체 등의 업무 관계관
<u>3</u> . (생 략)	<u>4</u> .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관계 법 령

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

- 제1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예 방·관리에 관한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자문 한다.
 - 1. 제5조, 제6조, 제10조, 제11조에 관한 사항
 - 2. 그 밖에 교육감 및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 - ③ 위원회는 「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」제6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 한다.